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274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전용기·권칠승·임광현

복기왕ㆍ이인영ㆍ박 정

박민규 · 정준호 · 송옥주

정진욱 · 임호선 · 오세희

신정훈 · 정을호 · 안도걸

민형배 • 문금주 • 윤종군

조계원 · 김선민 의원

(20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가 낮고,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항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오히려 엄벌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임.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8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9호"를 "제8호·제9호"로 한다. 제46조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3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		
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지 등) 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의2. 제8호·제9호 또는 제10		
	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		
	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		
	물을 이용하는 행위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44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의2. (생 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2		
제7호・ <u>제9호</u> 또는 제10호에	<u>제8호 • 제9호</u>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 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 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 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4. ~ 6. (생략)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2. (생 략) <신 설>

8. (생략)

②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1. ~ 3.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

<삭 제>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3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행위를 한 자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